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296
----------	-------

발의연월일 : 2025. 7. 4.

발 의 자 : 김남근 · 권향엽 · 김문수
김우영 · 김 윤 · 남인순
박용갑 · 박지원 · 박해철
송재봉 · 양부남 · 염태영
오세희 · 이광희 · 이병진
이재관 · 장종태 · 채현일
최민희 · 최혁진 · 한창민
황명선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 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

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1.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u>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신 설></u>	제54조(과징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u> <u>1.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u>

<신 설>

<신 설>

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기소유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신 설>

④ ~ ⑥ (생 략)

⑦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제5항 및 제6항-----

-----.